

# 2023년 학원 등 지도·점검 계획

2023. 1.



**전라북도군산교육지원청**  
【생활교육과 평생교육담당】

# 2023년도 학원 등 지도 · 점검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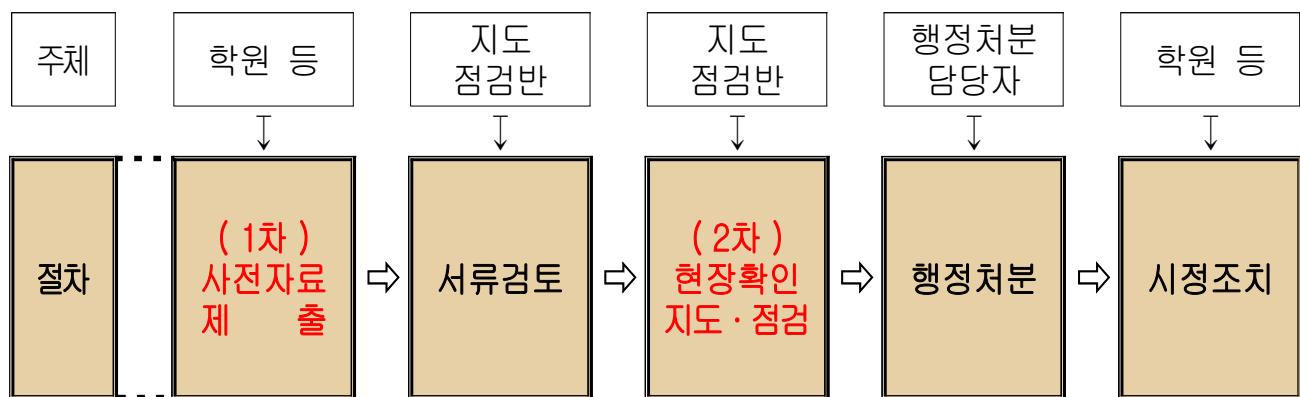
○ 지도 · 점검 기간: 2023. 1. ~ 2023. 12.

○ 점검반 구성: 2인 1조 상시 점검반 편성·운영

- 일반지도 · 점검: 지도 · 점검 담당 주무관 2명
- 특별지도 · 점검: 사안에 따라 추가 구성

○ 유형별 지도 · 점검 절차

- 일반 지도·점검 절차: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(‘이하 학원 등’)



- 2단계 지도 · 점검: 1차 서류검토 / 2차 현장점검

- 점검절차
  - (학원 등) 유선연락 ↳ (학원 등) 사전점검표 제출 ↳ (점검반) 등록·신고 된 현황과 대조 ↳ (점검반) 학원 등 실사 ↳ (학원 등/점검반) 확인서 작성 및 징구 ↳ (점검반) 행정처분
- 점검서식
  - [붙임 1] 학원(교습소) 사전점검표 [학원, 교습소 사전자료 제출용]
  - [붙임 1-1] 개인과외교습자 사전점검표 [개인과외교습자 사전자료 제출용]
  - [붙임 2] 학원(교습소) 지도 · 점검표 [교육청 지도 · 점검용]
  - [붙임 2-2] 개인과외교습자 지도 · 점검표 [교육청 지도 · 점검용]

- 특별지도 · 점검 및 민원 처리
  - 방법: 자료수집(민원 접수) □ 현장 확인 □ 확인서 징구 □ 행정처분
  - 점검서식
    - [붙임 3] 무등록·무신고 운영자 특별지도 · 점검표 [합동 지도 · 점검용]
    - [붙임 4] 학원 등 심야 교습시간 연장 특별 지도 · 점검표 [교육청 지도 · 점검용]

## ○ 주요 점검 사항

- 학원 관련 법령 기준에 따른 적법 운영 여부
- 등록된 교습비 등을 초과하여 징수하고 옥외표시제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
  - ‘교습비등 계시표’, ‘교습비등 반환기준 계시’를 학원,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주거지 내·외부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
  -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 확인 : 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하나 납부월, 납부자 성명, 교습과목, 교습비, 기타경비 기재
-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·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면서 교습비 등과 등록(신고)증명서 내용 중 주요 항목을 미표시하는 경우
  - 교습비 등, 등록(신고)번호, 학원(교습소)명칭, 교습과정(교습과목) 표시
- 화재, 재난 및 위기대응 매뉴얼 비치, 안전교육 및 자체점검 실시
  - 피난통로 장애물 제거, 소화기 사용요령 숙지 및 피난안내도 부착
- 유아 대상 외국어학원에서 교습과정을 위반하여 운영하는지 여부
-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관리 준수
  - 경찰서 신고 여부, 동승보호자 텁승, 운전자 안전의무, 안전교육이수(2년마다) 등
- 성범죄 경력 확인(연 1회 이상) 및 성범죄 발생 사실 유무
-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확인 및 범죄 사실 유무
  -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
-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 여부
- 자유학기제 시행과 관련된 선행학습 유발 마케팅 여부
- 진학실적 홍보 등 허위 및 과장 광고
  - 타 프랜차이즈 학원의 실적을 밝히지 않고 광고
  - 학벌을 조장하는 등의 광고

-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여부
  - 광고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수집·활용 등의 외 광고목적 사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
  - CCTV를 운영할 경우 안내판 설치

## ○ 자율관리위원회 활동의 적극 반영

- 학원자율관리위원회의 운영계획과 활동기록부를 참고하여 위원의 자율 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학원에 대하여 우리 청의 지도·점검 실시

## 행정사항

### ○ 학원 등 사전점검표 제출: 지도·점검 유선연락을 받은 곳

- ‘우리 교육청 홈페이지 > 민원마당 > 학원,교습소,개인과외교습자 > 자료실’에 서식 탑재 예정
- 학원(교습소): 「학원(교습소) 사전점검표(붙임 1)」를 작성·제출
- 개인과외교습자: 「개인과외교습자 사전점검표(붙임 1-1)」를 작성·제출

### ○ 제출방법

- 군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로 방문 또는 팩스(fax 063-452-5311) 제출  
\* 팩스로 송신한 경우에는 수신여부 확인전화(☎ 450-2671, 2672)

### ○ 현장방문 지도·점검 시 구비 서류

- **지도·점검반 현장점검 시 구비서류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**

■ 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19. 1. 10.>

학원,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장부 및 서류(제16조 관련)

장부 및 서류명	서식	보존기간
1. 원칙(학원만 해당한다)		준영구
2.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명서(학원만 해당한다)	별지 제3호서식	준영구
3. 교습소설립·운영신고증명서(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17호서식	준영구

4. 개인과외교습자 신고증명서(개인과외교습자만 해당한다)	별지 제22호의2 서식	준영구
5. 수입 및 지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장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	5년
6. 교습비등 영수증 원부	별지 제24호서식	5년
7. 수강생 대장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25호서식	3년
8. 직원 명부(학원 및 교습소만 해당한다)	별지 제26호서식	계속
9. 삭제 <2019. 1. 10.>		

- 지도·점검 대상 학원 등은 상급 기관 지도·점검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